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648호 2022. 4. 15.(금)

선 람	기관(부서)의 장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2-49호 사방지 지정 고시 1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2-594호 고창군 한옥건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7
- 고창군 공고 제2022-654호 2022년 제19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 대행사 제안서 평가결과 22

회 람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창군 고시 제2022-49호

사방지 지정 고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고시합니다.

고 창 군 수

2022년 4월 5일

1. 지정 사업 종류 : 사방댐, 유역관리

2. 사방지 지정 내역

가. 고시번호 : 고창군 고시 제2022-49호(2022.4.5.)

나. 사업종 : 사방댐, 유역관리

다. 지정내역 : 3개소 / 36필지 / 9,5279m²

- 사 방 댐 : 2개소 / 5필지 / 2,193m²

- 유역관리 : 1개소 / 31필지 / 7,334m²

3. 사방지 지정 사유 : 2022년 사방사업 시행

4. 기 타

가. 본 사방사업지 내에서는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시설물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나. 사방지의 지정 구역도면과 지번별 조서는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시군

산림업무담당과에 비치되어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063-560-2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2022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2022년 사방지의 지정 총괄표

(단위 : m²)

구분 시군	합 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유역관리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고창	6	2,193	-	-	-	-	6	2,193	31	7,334

2022년 사방지의 지정 총괄표

(단위:m²)

구분	소재지				끝지수	사방지 지정면적	비고
	시·군	구·읍·면	동·리	번 지			
사방댐	고창	심원	도천	산55	1	1,284	
사방댐	고창	해리	송산	1010	4	909	
유역관리	고창	심원	연화	769	31	7,334	

2022년 사방지의 지정 총괄표

(단위 : m²)

구분 시군	합 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유역관리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끝지수	지정면적
고창	6	2,193	-	-	-	-	6	2,193	31	7,334

2022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지정 도면



범 례	지적선	사방지	비 고
구 분	_____		

□ 지정 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고창	심원	연화	769	천	8,879	4,835	
			449	전	2,056	40	
			450	전	1,812	5	
			775	도	43	14	
			519-2	답	1,160	4	
			518	답	1,145	10	
			451	전	1,098	13	
			770	도	1,388	51	
			463	전	506	44	
			464	전	1,243	30	
			431	전	1,782	65	
합계							

□ 지정 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산137	임	19,736	744	
			산209	도	2,579	91	
			산136	임	46,612	164	
			465	전	658	3	
			511	답	2,714	45	
			513	전	407	5	
			492	전	1,144	19	
			493	전	1,881	20	
			510	답	76	8	
			508	답	1,676	272	
			774	도	417	56	
			507	양	1,045	69	
			787	도	298	27	
			506	답	1,835	48	
			497	답	922	245	
			498	답	1,078	99	
			500	임	893	13	
			501	답	2,936	209	
			산155	임	80,034	80	
			산151	임	37,190	6	
합계			31필지			7,334	

2022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 지정 도면



범례	지적선	사방지	비고
구분	_____		

□ 지정 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고창	심원	도천	산55	임	16,203	1,284	
합계			1필지			1,284	

고창군 공고 제 2022-594호

「고창군 한옥건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한옥건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한옥 신축 등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한옥 건축과 기존 한옥 보존·개선을 장려하여 한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창군 한옥건축 지원 조례」 제정
- 나. 한옥건축 지원대상 등 제정 (안 제3조 ~ 안 제8조)
 - 한옥건축지원 적용대상 :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의 한옥
 - 범위 및 비용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기준
 - 한옥건축 착수 및 완료신고
- 다. 한옥건축 지원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9조)
 - 보조대상이 한옥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라. 한옥등록 관리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지속적인 한옥 유지를 위한 관리
- 한옥등록대장 한옥등록신청서 작성, 보조금 지급현황 기록·관리
- 한옥 보존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마. 한옥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안 제12조 ~ 안 제13조)

- 공사 미 착수시 지원액 환수에 대한 조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전매제한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622 고창군 중앙로 245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전화 063-560-2397, Fax 063-560-240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560-23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고창군 한옥건축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3. .
 제출자 : 고창군수
 제안설명자 : 종합민원과과장

1. 제정이유

-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나. 한옥 신축 등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한옥 건축과 기존 한옥 보존·개선을 장려하여 한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창군 한옥건축 지원 조례」 제정
- 나. 한옥건축 지원대상 등 제정 (안 제3조 ~ 안 제8조)
 - 한옥건축지원 적용대상 :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의 한옥
 - 범위 및 비용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기준
 - 한옥건축 착수 및 완료신고
- 다. 한옥건축 지원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9조)
 - 보조대상이 한옥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 라. 한옥등록 관리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지속적인 한옥 유지를 위한 관리
 - 한옥등록대장 한옥등록신청서 작성, 보조금 지급현황 기록·관리
 - 한옥 보존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 마. 한옥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및 전매제한 (안 제12조 ~ 안 제 13조)
 - 공사 미 착수시 지원액 환수에 대한 조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전매제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 2022. 3. ~
- 다. 규제심사 :

4. 따로붙임

- 제정 조례안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한옥건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 건축미와 지역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공예문화시설등”이란 공예품·식품 등 상품을 생산·판매·전시·체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한옥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그 밖의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② 한옥수선 등의 한옥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범위 및 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한옥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는 자는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1.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2. 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3. 외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4. 고창읍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한옥관광자원활성 등을 위해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5. 고창읍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공예문화시설등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60%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

②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한 한옥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한옥신축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자 하는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고창군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액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한옥 건축 등의 착수 및 완료신고) ①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등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위원회 심의사항)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지원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4. 제12조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 및 원상회복,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한옥의 등록)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관

리하여야 한다.

- ②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보조사업자는 해당 한옥의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한옥건축지원사업’ 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한옥의 보존기간) ①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전매행위의 제한)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 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한옥수선 등 보조(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사업구분 및 신청액	신축(개축포함)	㎡ (원)		
	대 수 선	㎡ (원)		
	한옥외관수선	㎡ (원)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기 존 <input type="checkbox"/> 신축.개축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고창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div> 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5호서식】

한 옥 등 록 필 증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m ²
<p>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고창군 한옥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고 창 군 수 (인)</p>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		관리번호 □□□□ - □□□□	
등록번호			
등록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전통한옥 <input type="checkbox"/> 개량한옥		
	대지면적	m ²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용도
	구조		건립일
향후수선등 계획		보조 지원 내용	
현황 사진(전.후면)			

고창군 공고 제 2022-654호

2022년 제19회 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 대행사 제안서 평가결과

□ 평가위원 명단(실명)

강성주	김윤철
류명희	박정준
설태종	윤주선
정일태	조차영

※ 위원명은 가나다순임

□ 평가점수(정성적평가)

구 분		평 가 위 원 별 집 계 표 (위원명 비실명)								비고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위원8		
업체 (A)	평균합계	45.8									
	평가항목	기획력	9.6	8.8	8.8	9.2	8	6.4	4.4	7.2	
		창의력	9.4	6.8	8	8	6	4	4.8	7.4	
		프로그램구성력	13	12	12	12	12	6	7	9	
		행사운영능력	14.4	13.2	12.6	12.6	15	9	6.6	10.8	
		홍보계획	9.6	8.4	9.6	8	10	6	5.6	8	
		합 계	56 (최고)	49.2	51	49.8	51	31.4	28.4 (최저)	42.4	
업체 (B)	평균합계	44.5									
	평가항목	기획력	8	8.8	9.6	9.2	4	7.6	7.6	6.4	
		창의력	8	8	8.6	8	6	6	5.2	7.4	
		프로그램구성력	12	13	15	13	9	10	8	9	
		행사운영능력	12	13.2	13.2	13.2	7.8	9	10.2	9.6	
		홍보계획	8	9.2	10	8	6	6	5.6	8	
		합 계	48	52.2	56.4 (최고)	51.4	32.8 (최저)	38.6	36.6	40.4	

* 평가항목별 평균산정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함